

피델리티 글로벌 금융주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펀드 코드: 86972)

투자 위험 등급 3 등급 (다소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피델리티 글로벌 금융주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피델리티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에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투자관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실 수 있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정식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p>※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의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	---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의 최고 100%까지 모두자신탁인 피델리티 글로벌 금융주 증권 모두자신탁 (주식-재간접형)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모두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인 피델리티펀드 - 글로벌금융주펀드(Fidelity Funds - Global Financial Services Fund)에 주로 투자하며, 이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소비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세계 기업의 주식형 증권에 우선적으로 투자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집합투자업자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 (02-3783-0901) (환해지 관련 업무 위탁운용사: FIL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모집(판매) 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60,000,000,000,000 좌	
효력발생일	2018년 11월 15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fidelity.co.kr) 및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종류(Class)	종류 A	종류 A-e	종류 C1	종류 C-e	
가입자격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	
선취 판매수수료	1.2% 이하	0.5% 이하	-	-	
환매수수료	-	-	-	-	
보수 (연, %) (2018년 10월말 기준)	판매	1.0000	0.3700	1.5000	1.1000
	운용	0.1000	0.1000	0.1000	0.1000
	수탁회사	0.0350	0.0350	0.0350	0.0350
	일반사무관리회사	0.0250	0.0250	0.0250	0.0250
	기타비용	0.0349	0.0353	0.0357	0.0351
	총보수·비용	1.1600	0.5300	1.6600	1.2600
	합성 총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2.3049	1.6753	2.8057	2.4051

보수 포함)				
※ 주식사항	<p>※ 위에 기재된 종류(Class)는 일반 투자자들이 주로 투자하는 종류를 명시한 것으로서, 상기 종류 수익증권 외에 종류 C2, C3, C4, C5, CG, C-w, CP, CP-e, PRS, PRS-e, S, S-PRS, S-I, CI 및 F 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p>※ 선취판매수수료는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과수를 곱한 금액)의 상기 명시한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로 자동적으로 부과할 수 있음. 자동 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및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p> <p>※ 선취판매수수료는 수익증권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수익증권 환매시, 전환수수료는 전환시 이 투자신탁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되며, 보수는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마다 부과됩니다.</p> <p>※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 까지를 말함)에 따라 종류 C2, C3, C4, C5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에 한하며, 그 적용기준 및 내용은 간이투자설명서 'Ⅲ.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중 '(2) 전환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p>※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상기 작성기준일 직전 1 년 동안 발생한 기타비용 비율이 추정치로 사용되었습니다. 다만, 종류형의 경우, 모두투자신탁에서 발생한 기타비용을 투자비용대로 안분한 값과 각 종류(클래스) 단위에서 발생하는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p> <p>※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이 재간접형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p> <p>※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각 종류(클래스) 단위에서 발생한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p> <p>※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과 이 투자신탁의 모두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보수 및 기타비용을 모두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용에 따라 안분한 값의 합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값과 모두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외국집합투자기구의 직전 회계연도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외국집합투자기구로부터 환급 받는 금액을 반영하여 연 1.11%로 추정하였음)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p> <p>※ 총보수·비용 비율 및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이용된 추정치들(즉, 이 투자신탁 및 모두투자신탁의 기타비용,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은 각기 다른 대상기간의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총보수·비용 비율 및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위 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p>			
매입 방법	<table border="1"> <tr> <td data-bbox="529 1241 834 14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후 5 시 이전: 제 3 영업일 (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오후 5 시 경과후: 제 4 영업일 (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td> <td data-bbox="834 1241 1081 1461">환매 방법</td> <td data-bbox="1081 1241 1385 14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후 5 시 이전: 제 3 영업일 (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제 8 영업일 (D+7)에 환매대금 지급 · 오후 5 시 경과후: 제 4 영업일 (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제 9 영업일 (D+8)에 환매대금 지급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후 5 시 이전: 제 3 영업일 (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오후 5 시 경과후: 제 4 영업일 (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환매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후 5 시 이전: 제 3 영업일 (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제 8 영업일 (D+7)에 환매대금 지급 · 오후 5 시 경과후: 제 4 영업일 (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제 9 영업일 (D+8)에 환매대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후 5 시 이전: 제 3 영업일 (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오후 5 시 경과후: 제 4 영업일 (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환매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후 5 시 이전: 제 3 영업일 (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제 8 영업일 (D+7)에 환매대금 지급 · 오후 5 시 경과후: 제 4 영업일 (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제 9 영업일 (D+8)에 환매대금 지급 		
기준가	<p>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공고·게시일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신탁계약에 명시된 기발생된 부채, 수수료,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일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과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 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 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p> <p>공시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fidelity.co.kr), 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p>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의 최고 100%까지 모두자신탁인 피델리티 글로벌 금융주 증권 모두자신탁 (주식-재간접형)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모두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인 피델리티펀드 - 글로벌금융주펀드(Fidelity Funds - Global Financial Services Fund)에 주로 투자하며, 이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소비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세계 기업의 주식형 증권에 우선적으로 투자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 합니다.

참조지수 : MSCI AC World Financials 95% + Call 5%

* MSCI AC World Financials: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의 자회사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작성하여 발표한 세계 금융 업종 지수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의 최고 100%까지 모두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하며, 모두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자산총액의 최고 100%까지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피델리티펀드 - 글로벌금융주펀드(Fidelity Funds - Global Financial Services Fund)로서, 이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지표 및 자기자본수익(ROE) 등 기업 펀더멘털 개선을 보이는 금융 관련 기업에 투자함
- 장기적으로 시장점유율이 높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은 기업을 선호함
- 시장 규제 변화에 따라 상대적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함
- 금리 사이클, 인플레이션, 국가 건전성, 경제성장률, 각종 규제 등 거시적 환경요인을 고려함
- 펀더멘털 개선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금융 관련 기업을 발굴함

3 수익구조



4.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2018년 10월말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정은주	1985	차장	21개	23,533억원	[주요 경력] 2018.4 이후 피델리티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매니저 2014.4 - 2018.3 피델리티자산운용 법무 및 준법감시팀 2009.11 - 2014.4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 법무 및 준법감시팀 [학력 및 기타 이력]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상기 운용현황은 모두자신탁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습니다.
 ※ 운용전문인력이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피델리티펀드- 글로벌금융주펀드

(2018년 9월말 기준)

책임운용전문 인력/팀 이름	생년	직위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주요 경력 및 이력
			펀드 수	규모 (USD, 백만)	
Sotiris Boutsis	1972	포트폴리오 매니저	1	53.50	경력: 2009- 포트폴리오 매니저, Fidelity International, 런던 2002-2009 리서치 애널리스트, Fidelity International, 런던 1997-2000 Project Manager, ILSP, Athens 1995-1997 Software Engineer, ILSP, Athens 학력 및 자격: National Technical University of Athens에서 전기 & 컴퓨터 공학 학위 National Technical University of Athens에서 정보기술 박사학위 London Business School에서 MBA 취득 (2002년)

다. 모두자신탁의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운용전문인력

집합투자업자는 모두자신탁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거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외 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합니다.

이러한 헤지 거래는 해외 위탁 자산운용회사 내 외환 헤지거래를 전담하는 팀에서 팀 단위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다만, 헤지거래 여부 및 그 수준을 결정하는 팀과 실제 헤지거래를 위한 매매주문업무를 수행하는 팀이 다른 등 관련된 팀이 다수인 관계로 담당팀을 특정하여 기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헤지거래는 모두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내용에 따라 소극적(passive)으로만 발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5. 투자실적 추이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

연도	최근 1년차 2017.10.01 ~ 2018.09.30	최근 2년차 2016.10.01 ~ 2017.09.30	최근 3년차 2015.10.01 ~ 2016.09.30	최근 4년차 2014.10.01 ~ 2015.09.30	최근 5년차 2013.10.01 ~ 2014.09.30
글로벌금융주 증권 자(주식- 재간접형)	3.27	21.65	4.15	3.96	10.34

연도	최근 1 년차 2017.10.01 ~ 2018.09.30	최근 2 년차 2016.10.01 ~ 2017.09.30	최근 3 년차 2015.10.01 ~ 2016.09.30	최근 4 년차 2014.10.01 ~ 2015.09.30	최근 5 년차 2013.10.01 ~ 2014.09.30
글로벌금융주 증권 자 A(주식-재간접형)	3.23	21.36	4.19	3.86	9.76
글로벌금융주 증권 자 C1(주식-재간접형)	2.71	20.75	3.68	3.34	9.22
글로벌금융주 증권 자 CP(주식-재간접형)	3.74	10.30			
글로벌금융주 증권 자 C-c(주식-재간접형)	3.12	21.24	4.08	3.75	9.65
글로벌금융주 증권 자 N(주식-재간접형)	0.00	0.00	0.00	15.65	10.81
글로벌금융주 증권 자 C2(주식-재간접형)	2.81	20.89	3.78	4.77	9.33
글로벌금융주 증권 자 C3(주식-재간접형)	2.92	21.00	1.38	3.55	9.27
글로벌금융주 증권 자 C4(주식-재간접형)	3.02	23.66	3.99	-3.00	6.00
글로벌금융주 증권 자 C5(주식-재간접형)	3.12	21.25	4.09	3.76	9.65
글로벌금융주 증권 자 A-e(주식-재간접형)	3.88	22.11	4.83		
글로벌금융주 증권 자 C-w(주식-재간접형)	4.26	12.31			
글로벌금융주 증권 자 S(주식-재간접형)	4.00	22.25	4.95	4.64	
글로벌금융주 증권 자 PRS(주식-재간접형)	3.64	10.42			
글로벌금융주 증권 자 PRS-c(주식-재간접형)	3.95	17.37	4.90		
글로벌금융주 증권 자 S-PRS(주식-재간접형)	4.07	22.34	5.02		
글로벌금융주 증권 자 F(주식-재간접형)	4.21	11.89			
글로벌금융주 증권 자 CP-e(주식-재간접형)	3.99				
참조지수	3.82	19.76	2.33	-10.93	5.25

- 1) 참조지수 : MSCI AC World Financials 95% + Call 5%
- 2) 참조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음
- 3)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의 기간수익률을 기재함. 다만 각 투자신탁 및 종류별로 설정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상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해당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상기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2018년 9월말 기준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조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 대상 기간에 대하여는 과거(변경전) 참조지수를 사용하였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구 분	주된 투자위험
투자원금손실위험	투자신탁의 투자 원금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보장되거나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투자 원본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또는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투자자들을 제외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유가증권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외국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외국집합투자증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구 분	주된 투자위험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위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그러한 기초투자자산의 가치는 금리와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변동되게 됩니다. 채권 등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는 금리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변합니다. 몇몇 투자신탁은 가격하락 및 자본손실의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고수익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 등급 유가증권, 등급이 낮은 유가증권 및 이에 상당하는 등급이 없는 유가증권은 등급이 높은 유가증권 보다 수익 및 가격의 변동 폭이 더 넓을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모투자신탁은 환율위험을 헤지하고 목표 환헤지 비율은 최고 90% 수준이지만,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분산투자 관련위험	오직 한 국가에만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당해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투자자산에 대한 거래비용이 다른 국가에서 보다 더 높고 유동성은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가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히 현금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국가 또는 투자형태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유사한 거래(특히 대규모 거래)라고 할지라도 대형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투자신탁의 운용비용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래 투자자들은 투자신탁 선정에 있어 이러한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국가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어느 한 국가의 위험에 노출이 적어지는 대신에 많은 국가의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통화로 표시된 투자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통화가치의 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수익권 가치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위험	투자신탁은 전부 혹은 일부를 신흥시장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증권이 선진국 시장의 증권 보다 변동이 더 심하고, 따라서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정지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파생상품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 등)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래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론적으로 옵션매도로 인한 손실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러한 파생상품 거래는 투자신탁재산에 큰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재간접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운영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격조정정책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가격조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집합투자기구는 펀드의 대량 매입과 환매에 관련되는 비용을 당일 거래하는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장기 투자자들을 희석화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펀드의 기준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합니다. 즉, 외국집합투자기구는 특정일에 투자자의 거래 금액 및 유형에 따라 기준가가 인위적으로 상향 혹은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인위적인 조정에 따라서 본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가격조정정책으로 인한 기준가의 변동성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환매제한 및 환매연기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일정한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또는 등록신청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헤지위험	투자신탁이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을 명시한 것으로 투자위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투자위험 등급 분류

피델리티 자산운용 주식회사는 **투자위험, 운용성과에 따른 실제 수익률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신탁의 위험 등급을 6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연환산 표준편차는 14.11%으로,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은 6등급 중 **3등급(다소 높은 위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위험 등급 분류는 피델리티 자산운용의 내부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으로서 판매회사의 분류등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위험 등급 분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결산시마다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을 재측정하며 투자위험등급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위험관리

가. 포트폴리오

펀드 운용과 관련된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리스크 요인별로 사전적/사후적 대응 방향을 수립·실행합니다. 또한, 법령 및 당사의 엄격한 내부규정에 근거한 내부 모니터링을 통하여, 고객에 대한 선량한 자산관리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나. 환위험 관리 전략

구분	세부내용
환헤지여부	모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기구 내 투자자산 중 매매가 자유로운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환위험을 소극적(passive)으로 헤지하고 있습니다.
환헤지 방법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주로 활용하여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며, 시장 상황 및 특성에 따라 여타 방법도 활용 가능합니다.
목표 환헤지비율	모투자신탁의 목표환헤지비율은 포트폴리오 순자산의 최고 90% 수준이지만,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 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환헤지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호가중심인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특성상, 환거래는 거래 규모를 감안하여 거래 당시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환율과 비슷하거나 경쟁력있는 환율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수료 등의 어떠한 거래 비용도 가격(환율)에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거래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얻게 되는 어떠한 이익이나 손실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된 비용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산출하거나 정확하게 추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헤지를 실행하게 되면, 매매가 자유로운 외국통화의 가치가 원화에 대비하여 하락하는 경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반면, 상기 외국통화에 대비하여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투자자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또한 배제하게 될 것입니다. 헤지 효과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반영될 것입니다.

Ⅲ.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 다음의 투자신탁 또는 수익자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안내는 일반적으로 모든 투자신탁에 대해서 참고용으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세법의 변경, 과세 당국의 해석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다음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정확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수익자에 대한 과세

- 거주자 개인 및 내국 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소득세율 38%, 지방소득세 3.8%)로 종합과세 됩니다.
- 국내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국내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서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국내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 (나) 국내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헤지할 목적으로 행한 외환 선도거래(FX Forward)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보다 큰 경우(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헤지할 목적으로 행한 외환 선도거래(FX Forward)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 부분이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되기 때문임)

※ 해외주식투자전문투자증권저축을 통한 가입자에 대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문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직접 또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합니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해외 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등은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과세 대상인 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 및 해외 상장주식 매매·평가시 환차손이 과세대상 이익인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이익에 대해 과세함

【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유의사항】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환헤지 거래를 수행합니다. 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여전히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세금 측면에서 중대하고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가입자부담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연금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금액부터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 적용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인출 (연금수령)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에 한함)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시 과세	연금소득으로 3.3~5.5% 분리과세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주1)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함.

※ 위 내용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시행됩니다.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과세관청의 해석의 변경 및 정부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해외주식투자전문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문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직접 또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합니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관련 사항은 “해외주식투자전문투자증권저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투자전문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가입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도	1인당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문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함)
대상펀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에 직접 또는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통하여

구분	주요 내용
	60%이상 투자하는 펀드 (해외주식투자전문펀드)
세계헤택	직접 또는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통하여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은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세계헤택적용기간	가입일부터 10년까지

(2) 전환절차 및 방법

1. 동일 투자신탁내 수익증권의 전환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 까지를 말함)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 종류 C1 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 종류 C1 → 종류 C2
- 종류 C1 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종류 C2 → 종류 C3
- 종류 C1 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종류 C3 → 종류 C4
- 종류 C1 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 종류 C4 → 종류 C5

※ 2011년 1월 17일 이전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종류별 수익증권 보유기간의 산정은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매수한 일자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위의 수익증권의 전환절차에 따라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하는 날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 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됩니다. 또한, 매수청구 또는 환매청구를 진행중인 경우에는 수익증권이 전환되지 않습니다. 기타 전환관련 자세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환대상 투자신탁간 수익증권의 전환

해당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매입관련 유의사항

과도한 매매의 제한: 이 투자신탁은 장기투자를 목표로 설정 및 운용되며 과도한 매매를 지양합니다. 투자재산에 대한 단기매매 또는 과도한 매매는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전략을 방해하고 운용 비용을 증가시켜 투자신탁의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시차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자, 또는 당해 투자자가 단기매매나 과도한 매매 패턴을 보이거나 이 투자신탁의 운용에 방해가 되거나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투자자들의 수익권 매입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90일미만 동안 보유하는 거래는 과도한 매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투자업자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요청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과도한 매매를 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해 투자자의 거래내역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예에 불과하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단기매매 또는 과도한 매매를 하고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이 투자신탁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거래내역 및 공동으로 관리되는 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fidelity.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정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fidelity.co.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fidelity.co.kr)